Security-related Laws

담당교수 : 신원

대상: 정보보호학과 3/4학년

과목: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학기: 2020년 1학기

- × 법의 정의와 역할
- × 정보화 진흥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
- × 인터넷사용 관련 법 규제
- × 개인 정보보호에 관련 법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의 정의와 역할

× 법의 정의

★ 외부의 행위로 실행되었을 때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하여 결정하여 주는 것

× 법과 도덕

| 구분 | 법 | 도덕 |
|----|--|---|
| 목적 | •정의(定義)의 실현 | •선(善)의 실현 |
| 성격 |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 •강제성 •양면성 (권리와 의무 규율) •타율성 | •내면적 양심, 동기 중심 •강제성 •일면성 (주로 의무 규율) •자율성 |



× 법의 역할

- ★ 분쟁해결
 - *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 (민사 분쟁)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 및 그 기관과 개인 간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능
- × 질서유지
 - * 헌법은 자유민주주주의를 방어하고, 형법은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법은 재산권의 한계를 정하고 개인의 자율에 의한 재산·신분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규정
- ★ 공익추구
 - *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 ✗ 정의와 인권수호
 - > 어느 누구로부터도 차별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 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 전기통신기본법
 -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 전기통신사업법
 -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 법령

- 🗴 전파법
 - *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 육성관련법령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 콘텐츠산업 진흥법
 - *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 방송법
 -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 육성관련법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 ★ 전자서명법
 - *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 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 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제정
- ✗ 개인정보보호법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

* 정보화역기능 방지 관련 법령

- ★ 통신비밀보호법
 -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 장함을 목적으로 제정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헌법

🗴 언론 출판

×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 자유와 권리

×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형법

- ★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 ※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 ★ 명예훼손
 -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음란행위
 -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촬영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벌칙
 -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 는 누설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7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 1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 으로 제공한 자
 -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 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 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5. 삭제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법 중요 조항

-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보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
- 보호 범위의 확대
 -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중요 조항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x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 *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 ★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한다
- 🗴 해당 조항
 - × 제2조(정의)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 해당 조항
 -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 해당 조항
 -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 🗴 해당 조항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 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 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 해당 조항
 -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확대 등이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한다
- 🗴 해당 조항
 -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 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 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 해당 조항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 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한다
- 🗴 해당 조항
 -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 제39조(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 🗶 해당 조항
 - × 제40조(설치 및 구성)
 - ×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 ✗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 × 제44조(처리기간)
 - ×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 🗴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 × 제47조(분쟁의 조정)
 - ×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 제49조(집단분쟁조정)
 - × 제50조(조정절차 등)

× 단체소송의 도입

- ★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준법 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되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 송으로 제한한다
- 🗴 해당 조항
 - ×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 제52조(전속관할)
 - ×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 제54조(소송허가신청)
 - ×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 ×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 ※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 🗴 해당 조항
 -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중요 조항

- ★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등을 의미하며,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사업 하도급 승인, 적정대가 지급 등의 제도가 적용
-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하며, 여기에는 전문인력양성, 원천기술 개발, 정보보호기업 육성·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
-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수요예측과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구매수요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보호기 업에 제공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중요 조항

- 🗴 사업 하도급 승인
 - > 공정한 사업발주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등과 계약한 정보보호시스 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재하도급 시, 미리 공공기관등의 서면 승인을 받 도록 함
-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 적정 대가 지급
 - *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해서 공공기 관등은 정보보호사업 계약체결 시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표준 계약서에 반영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기반 마련
 -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업(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정보보호 공시
 -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 기업 스스로 공시하도록 규정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중요 조항

- 🗶 표준화 사업의 추진
 - ※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 술등의 표준화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 ★ 전문인력의 양성
 - *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 요소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정보보호 성능평가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 및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 수 정보보호 기술등 및 기업 지정
 - ▼ 우수한 정보보호기술과 제품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및 기업을 지정 지원하도록 함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중요 조항

-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세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 * 정보보호 기업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를 신속·간편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